

「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약관명 : 「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약관」

■개정 시행일 : 2024년 2월 13일 (화)

■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■주요 변경 내용 :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, 서비스 명칭, 이용 및 해지,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과 고지 등 전자고지 서비스 변경사항 약관 반영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방세·세외수입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</u></p> <p>제 1 조 (목적) 본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"<u>지방세·세외수입 전자송달 서비스</u>"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"은행"과 "<u>이용자</u>"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"<u>서비스</u>"는 "<u>이용자</u>"가 은행의 "<u>인터넷지로 모바일 앱</u>"을 통해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를 수신·열람하고, 지방세·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2. "<u>이용자</u>"란 본인명의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"<u>인터넷지로 모바일 앱</u>"을 설치하고, 은행의 인증절차와 "<u>서비스</u>" 동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. 3. "<u>인터넷지로 모바일 앱</u>" 이란 "<u>이용자</u>"가 스마트폰에서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를 "<u>하나알리미</u>"에서 수신·열람하고 "<u>하나원큐</u>"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약관</u></p> <p>제 1 조(목적) 본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이 <u>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와 관련하여 은행과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등</u>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의미</u>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"<u>전자고지 서비스</u>"는 <u>회원이 은행의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가 지방세입 정보통신망인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수신되었음을 안내하는 서비스</u>를 말합니다. 2. "<u>회원</u>"이란 <u>은행의 앱을 설치하고, 은행과 "서비스"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</u>를 말합니다.</p> <p><삭제></p>	<p>약관명칭변경 (행안부 '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약관' 개정에 따름. 이하 '약관'이라함)</p> <p>지방세입으로 용어 통일, 본 서비스 위탁관계 명확화</p> <p>용어변경 서비스범위 명확화</p> <p>문구수정</p> <p>약관반영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u>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.</u></p>		
<p><u>4. “지방세”란 지방세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특별시세, 광역시세, 특별자치시세, 도세,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, 군세, 구세를 말합니다.</u></p>	<p><u>3. “지방세입”이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하며, 지방세는 「지방세 기본법」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특별시세, 광역시세, 특별자치시세, 도세,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, 군세, 구세를, 지방세외수입은 「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의 2 호에 따른 지방세 외수입을 말합니다.</u></p>	<p>문구수정 및 명확화</p>
<p><u>5. “세외수입”이란 「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의 1 및 동조 제 2 조의 1 의 2 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, 과태료, 사용료, 재산임대수입 등을 말합니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약관반영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4. “과세기관”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입을 부과·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.</u></p>	<p>2 조 7 호에서 이기/문구수정</p>
<p><u>6. “인증”은 “서비스”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식별하고자 하는 절차로서 “은행”은 공인인증서 등의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사용합니다.</u></p>	<p><u>5. “인증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식별하는 절차로서 은행은 “하나은행 인증서 서비스”를 사용합니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6. “하나은행 인증서 서비스”는 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PKI 기반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.</u></p>	<p>약관반영</p>
<p><u>7. “지방자치단체”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말합니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2 조 4 호로 이기</p>
<p><u>8. “관계법령”이란 <신설>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을 말합니다.</u></p>	<p><u>7. “관계법령”이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령을 말합니다.</u></p>	<p>정의 명확화 법령 변경</p>
<p><u>9. “위택스”란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세·세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약관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u>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.</u></p> <p>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<u>"서비스"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 <p>제 3 조 (이용계약의 성립 <u><신설></u>)</p> <p>① <u>이용계약은 "서비스"의 "이용자"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가 스스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, 은행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"이용자" 가입을 신청하고, "은행"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</u></p> <p>② <u>"은행"은 "가입신청자"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"은행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</u></p> <p>1. <u>"가입신청자"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"이용자"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. 단, "은행"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</u></p> <p>2. <생략></p> <p>3. <생략></p> <p>4. <u>"가입신청자"가 만 14 세 이하인 경우</u> <신설></p> <p>5. <생략></p> <p>6. <u>"가입신청자"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기타 "은행"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</u></p> <p>7. <생략></p> <p>③ <u>제 2 항에 따라 "이용자"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"은행"은 원칙적으로 이를 "가입신청자"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</u></p> <p>④ <u>"이용자" 가입 신청은 "가입신청자"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, 이를 타인</u></p>	<p>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<u>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</u></p> <p>제 3 조(이용 계약의 성립 <u>및 약관의 변경</u>)</p> <p>① <u>서비스 이용 계약은</u>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<u>합니다</u>)가 <u>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, 은행이 이에</u>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.</p> <p>② <u>은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.</u></p> <p>1. 가입 신청자가 <u>본 약관이나 은행의 다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는 경우. 단, 은행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</u></p> <p>2. <좌동></p> <p>3. <좌동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4. <u>은행이 제공하는 수단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거나 은행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은행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5. <좌동></p> <p>6. <u>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법령 및 기타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</u></p> <p>7. <좌동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 <u>회원가입 신청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하여야 하며, 타인이 대신 가입 신</u></p>	<p>문구수정 조 명칭변경 문구수정</p> <p>3 조 3 항에서 이기 및 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 <p>약관반영 약관반영</p> <p>문구수정</p> <p>3 조 2 항으로 이기</p> <p>문구수정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.</p>	<p><u>청을 하도록 하거나</u>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.</p>	
<p><u>⑤ "이용자" 가입 신청 시 타 기관의 앱을 통해 제공되던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, 다만, 위택스 전자사서함 및 전자우편주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차세대전자고지 반영</p>
<p><신설></p>	<p><u>④ 서비스의 가입 신청과 해지는 신청 및 해지일의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.</u></p>	<p>약관반영</p>
<p><신설></p>	<p><u>⑤ 은행이 해당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.</u></p>	<p>15 조에서 이기</p>
<p><신설></p>	<p><u>⑥ 제 5 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	<p>약관반영</p>
<p><신설></p>	<p><u>⑦ 은행은 제 6 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"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.</u></p>	<p>약관반영</p>
<p><신설></p>	<p><u>⑧ 회원이 제 7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	<p>약관반영</p>
<p>제 4 조 (서비스의 이용 개시)</p>	<p>제 4 조 (서비스의 이용 개시)</p>	
<p>① "은행"은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"이용자"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"서비</p>	<p><u>① 은행은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</u></p>	<p>문구수정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스"를 제공합니다. 단, 이용 가능한 개별 "서비스"는 "서비스" 및 "이용자"의 스마트폰 이용환경, "이용자"의 별도 동의 여부, 전자금융 거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1.<생략> 2."고지서" 수신 3."지방세·세외수입" 납부 4.기타 "은행"이 추가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"이용자"에게 제공하는 서비스</p> <p>② 제 1 항에 따른 개별 "서비스"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"인터넷지로 모바일 앱" 내에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.</p> <p>③ "서비스" 이용신청 및 해지는 은행 영업일 09:00 ~ 22:00 까지 가능합니다. 다만, 개별 "서비스"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때의 이용시간은 "인터넷지로 모바일 앱"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④ "은행"은 "서비스"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 시간은 "인터넷지로 모바일 앱"을 통해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. <신설></p> <p>⑤ "서비스" 신청시, 서비스 신청일의 익월부터 부과되는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가 전자송달되며,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⑥ 전자송달 대상 지방세·세외수입 세목 종류 및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	<p>니다. 단,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회원의 스마트폰 이용환경,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,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1. <좌동> 2. <u>고지서 수신 안내</u> 3. <u>지방세입 납부</u> <u><삭제></u></p> <p>② 서비스 이용 신청 및 해지는 매 영업일 09:00 ~ 22:00 입니다. 단 서비스 점검으로 사전 안내된 시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안내는 제 5 조를 준용합니다.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은행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 서비스 신청 시, 지방세입 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신됩니다. 1. 지방세입 고지서 : 신청 월의 다음 달 첫 영업일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입 고지서 2. 통지서, 안내문 등 그 외 문서 :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문서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	<p>문구수정 및 4 조 3 항,4 항에서 이기</p> <p>4 조 2 항으로 이기</p> <p>4 조 2 항으로 이기 정의 명확화</p> <p>약관반영</p> <p>약관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 5 조 (서비스의 일시 중단)</p> <p>① <생략>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<생략></p> <p>3. 기타 “은행”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위 1 호 및 2 호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② “은행”은 제①항의 사유로 “서비스”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 화면에 게시합니다. 다만,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6 조 (서비스 해지)</p> <p>①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 “서비스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창구,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서비스 해지 신청일 당월에 부과되는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는 전자 송달되며, 익월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는 종이고지서로 발송됩니다.</p> <p>③ 위택스를 제외한 타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 7 조 (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)</p> <p>① “스마트폰”을 변경 한 경우 이용자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재설치 후 “은행”이 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</p>	<p>제 5 조(서비스의 일시 중단)</p> <p>① <좌동></p> <p>1. <좌동></p> <p>2. <좌동></p> <p>3. <u>천재지변 등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>② 은행은 제 1 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<u>사전에 고지합니다. 다만,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6 조(서비스 해지)</p> <p>① <u>회원은 은행의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는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고지 안내를 수신 받지 않는 것으로 전자 송달 해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</u></p> <p>② <u>서비스 해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되므로 서비스 신청 해지 적용일 이전에 송달되는 지방세입 문서는 은행의 앱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③ <u>은행의 앱을 통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은행의 휴면 회원으로 전환되거나 탈퇴하는 경우, 해당 회원의 신청된 전자고지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.</u></p> <p>제 7 조(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)</p> <p>① <u>회원이 “스마트폰”을 변경한 경우, 은행의 앱을 재설치하고 은행이 정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정의 명확화</p> <p>문구 수정</p> <p>차세대전자고지 반영하여 서비스해지 명확화 (1~3 항)</p> <p>문구수정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② “이용자”는 “은행”에 이미 신고한 성명, 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 8 조 (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 수신) <신설></p> <p>① “은행”은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를 “이용자”가 인증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으로 “은행” 또는 “자치단체”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.</p> <p>②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에게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으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(Push Message)을 “이용자”가 Push 메시지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전송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를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 수신·열람하여야 하며, 해당 앱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④ “은행”은 “자치단체”가 “이용자”에게 전송하는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 및 “고지내역”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, “자치단체”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 및 “고지내역”은 고지서상의 납기후 기간이 경과하면 “은행” 내의 “서비스” 운영 시스템에서 삭제 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⑤ “이용자”는 수신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</p>	<p>② <u>회원은 은행에 등록된 성명, 이메일,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,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③ <u>스마트폰의 도난, 분실 시 회원은 즉시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제 8 조(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 및 고지)</p> <p>① <u>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은 관계법령에 따라「통합지방세입정보 통신망」의 전자사서함(이하 “위택스”라 한다.)에 수신·저장되었을 때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② <u>은행의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전자고지는 회원이 은행의 앱에서 별도의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③ <u>회원이 은행의 앱을 삭제하는 경우,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④ <u>은행은 회원이 고지 안내를 제공하는 앱을 통해 지방세입 문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<삭제></p>	<p>업무명확화</p> <p>약관반영</p> <p>조명칭변경 8 조 6 항에서 이기 및 문구수 정</p> <p>8 조 2~4 항 문구수정 (차세대전자고 지반영)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있을 경우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 내에 고지된 “자치단체”에게 직접 문의 하여야 하며, “은행”이 운영하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에 대해서는 “은행”에서 안내합니다.</p> <p>⑥ 고지서의 송달 시점은“지차제가”가 발송한 고지서가 “은행”의 서버에 저장된 시점으로 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 9 조(지방세·세외수입 납부)</p> <p>①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서 수신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의 금액을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에서 본인의 기 등록된 출금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서 납부된 지방세·세외수입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환급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</p> <p>③ “은행”은 납부를 위한 “지방세 고지서”금액에 대한 “이용자”와 “지방자치단체” 사이의 계약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</p> <p>제 10 조 (은행의 의무)</p>	<p><삭제></p> <p>⑤ 은행은 회원에게 전달된 전자고지 발송 결과를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제공하게 됩니다.</p> <p>⑥ 은행은 전자고지 이후 회원에게 전자고지 된 사실 확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며, 그 외의 정보는 고지의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합니다.</p> <p>▸ 보유정보 : 회원정보, 전자납부번호, 고지세목, 고지일시, 고지수단</p> <p>⑦ 회원은 지방세입 고지서 내용 및 전자 송달 사실과 관련한 문의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에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전자고지 사실에 대한 문의는 은행에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⑧ 은행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전자고지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제 9 조(지방세입 납부)</p> <p>① 회원은 수신한 지방세입 고지서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에서 정한 납부 수단으로 은행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회원은 은행에서 납부를 한 지방세입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, 납부된 지방세입금은 지방세입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 처리됩니다.</p> <p><삭제></p> <p>제 10 조 (은행의 의무)</p>	<p>8 조 5~8 항 차세대전자고지 반영하여 신설</p> <p>조명칭변경 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① “은행”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“서비스”를 <u>제공</u>합니다.</p> <p>②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,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 등으로 야기된 “이용자”의 손해에 <u>대해</u>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③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 인증강화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스마트폰 식별을 위한 정보 (스마트폰 모델명, UUID 등)를 수집하여 활용하며, 동 정보는 로그인 등 “이용자” 인증정보로만 사용합니다.</p> <p>④ “은행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“이용자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“은행”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“이용자”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	<p>①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<u>제공하도록 노력</u>합니다.</p> <p>② 은행은 <u>회원</u>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, 도난, 유출 등에 따른 회원의 손해에 <u>대하여</u>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③ <u>은행은 타인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회원의 인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</u>합니다.</p> <p>④ <u>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,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은행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</u> 합니다.</p>	<p>문구수정</p> <p>용어변경</p> 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
<p>제 11 조(이용자의 의무)</p> <p>① “이용자”는 본 “서비스”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“계좌번호”, 등록 스마트폰 등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·누설,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</p> <p>3.~6.<생략></p> <p>② “이용자”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“은행”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“이용자”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“서비스”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“은행”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“은행”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</p>	<p>제 11 조(<u>회원</u>의 의무)</p> <p>① <u>회원</u>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</p> <p>1. <좌동></p> <p>2. <u>로그인 비밀번호, 결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</u> 제 3 자에게 제공·누설,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</p> <p>3. ~6.<좌동></p> <p>② <u>회원</u>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<u>회원은 관계법령, 본 약관의 규정</u>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은행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</p>	<p>조명칭변경</p> <p>용어변경</p> <p>문구수정</p> <p>용어변경</p>
<p>제 12 조 (개인정보의 제공, 위탁)</p>	<p><u><삭제>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약관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u>“은행”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“이용자”의 동의를 받아 “이용자”의 개인 정보를 “지방자치단체”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제 13 조 (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)</u> ① <u>은행은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의 운영 및 관리, 수납정보, PUSH 메시지 발송, 수납정보 제공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.</u> ② <u>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, 납부금액에 대한 처리, 수납 및 고지내역 관련 응대를 담당합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 14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</u> <u>손해배상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“손해배상 및 면책” 변경 부분을 따릅니다.</u></p> <p><u>제 15 조 (약관의 변경)</u> <u>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“약관의 변경” 부분을 따릅니다.</u></p> <p><u>제 16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u> ① <u>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</u></p>	<p><u>제 12 조(서비스 제공 주체 및 범위)</u> ① <u>은행은 은행 앱의 운영 및 관리,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, 전자 송달된 내역의 수신 안내 및 납부처리를 담당합니다.</u> ② <u>지방자치단체는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, 납부 금액에 대한 처리, 수납 및 고지 내용에 대한 응대를 담당합니다.</u> ③ <u>행정안전부(위택스 전자사서함)은 회원에 대한 전자고지서 등의 전자문서 송달을 담당합니다</u></p> <p><u>제 13 조(이의제기와 분쟁의 처리)</u> ① <u>이용자는 전자 송달의 안내 수신에 대하여 은행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와 분쟁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u> ② <u>은행은 제 1 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은행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,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</u> ③ <u>회원은 제 2 항에 따른 은행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,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제 14 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u> ① <u>은행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 <p>업무 명확화</p> <p>약관반영</p> <p>약관반영</p> <p>3 조로 이기</p> <p>용어변경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터넷지로 이용약관,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 <p>제 17 조 (관할법원) 이 약관과 <u>관련한</u>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② <u>본</u>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전자고지 은행의 인증서 이용약관, 전자고지 은행의 결제서비스 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약관</u>,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 <p>제 15 조(관할법원) <u>본</u> 약관과 <u>관련하여</u>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제정></u> <u>본 약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1></u> <u>본 약관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2></u> <u>본 약관은 2024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 <p>시행일 표기 (이하 동일)</p>